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3가합563127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한국무역보험공사

피고1. A

2. B

변론 종결2014. 10. 7.

판결 선고2014. 10. 30.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33,332,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1.부터 2014. 1. 6.까지는 연 11%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A 사이에 전남 고흥군 C 임야 78,744m²에 관하여 2013. 9. 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위 가.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13. 9. 12. 접수 제1571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3. 25. 주식회사 선우엔터테인먼트(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문화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를 330,000,000원, 보증기간을 2013. 9. 27.까지로 하는 내용의 수출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3. 3. 25. 소외 은행에 대하여 보증한도를 330,000,000원, 보증기간을 2013. 9. 27.로 하는 수출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으며, 피고 A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와 소외 회사, 피고 A은 이 사건 약정 당시, 소외 회사에게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연체 등에 의한 신용불량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나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등의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 등이 없더라도 원고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소외 은행에 그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위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0. 4. 6. 소외 은행과 사이에 여신(한도)금액을 8억 원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몇 차례 여신금액과 변제기 등 여신거래조건을 변경하였는바, 2013. 3. 27. 체결된 변경약정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원금은 330,000,000원, 변제기는 2013. 9. 27.이다.

라. 소외 회사가 2013. 10. 4. 위 대출금채무의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는 2013. 11. 20. 소외 회사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333,332,91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원고와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의 다음날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가

정한 비율은 그 이행일의 다음날부터 연 11%이다.

바. 피고 A은 채무초과 상태인 2013. 9. 9. 피고 B과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전남 고흥군 C 임야 78,744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9. 12. 접수 제15712호로 채무자 선정자 D,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갑 1 내지 10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333,332,91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3. 11. 21.부터 2014. 1. 6.까지는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연 11%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미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그로부터 불과 1개월 후에 소외 회사의 소외 은행에 대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위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으로 원고의 사전구상권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3. 11. 20. 소외 은행에 위 대출금채무를 실제로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또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바, 갑 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3. 9. 9.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3필지의 토지를 소유하다가 2013. 7. 4. E에게 위 3필지의 토지를 매도하여 2013. 9. 9.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25,906,776원에 불과하였다).

(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은 그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보아 이때문에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채무자인 피고 A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피고 B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D에게 2012. 8. 6. 2억 원, 2012. 9. 17. 금 3억 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D 소유의 원주시 F 임야 1,491㎡(이하, 'F 토지'라고 한다)에 2012. 8. 7.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위 토지를 매각하려는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체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대신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 B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B이 2013. 9. 9. 채무자를 D,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나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D에게 2012. 2. 27. 5억 원, 2012. 8. 6. 2억 원, 2012. 9. 17. 3억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B이 D로부터 2012. 2. 28. 및 2012. 8. 7. F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가 2013. 6. 3. 이를 모두 말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 B은 D에게 2012. 2. 27.부터 2012. 9. 17.까지 사이에 합계 10억 원을 대여하는 등 D와 사이에 그동안 상당한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D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주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 피고 A은 D의 부친으로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A의 자산상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F 토지에 설정된 피고 B의 근저당권 말소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사이에 약 3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F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6억 5,000만 원임에 반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2억 원에 불과한 점, F 토지와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의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피고 B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판사강인철

판사전용수

판사방일수